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 _Vol.161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11.7~ 11.13) -

November 14, 2022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기획 재정부	• **외국환거래법 전면개편을 위한 국민과 현장 의견 수렴** **- 신외환법 국민 의견제안 공모전 개최** 기획재정부는 외환제도 전면개편 작업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이 외환거래시 현장에서 경험하는 불편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22.11.8일부터 3주간 '신외환법 국민 의견제안 공모전'을 개최하기로 함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민관합동 TF를 통해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의 전면개편 필요성을 검토해 옴 신외환법 주요 과제(안) 으로는 **① (외환거래 규제개혁) 자본거래 신고제 폐지, 해외직접투자 신고 절차 완화 등** **② (업권별 업무범위 재검토) 업권별 업무 및 규제 재조정(예:증권사 일반환전) 필요성 등** **③ (법령체계 정비) 외환법 목적 성격 재검토, 법령 서술구조 단순화 등** **④ (새로운 거래방법 대응) 외환 관련 신종거래 규율방안 검토**	2022-11-08
산업통상 자원부	•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 마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혁신정책관 주재로 한전 등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 및 업계 종사자 등이 참석하는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간담회」를 개최함 이번 간담회에서는 산업부·한전·민간 전문가·업계 종사자 등이 함께 모여 데이터센터의 지역 분산 필요성·추진 방향에 대하여 논의함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 주요 내용으로는 **① 신규 대규모 전력 수요에 대한 평가체계 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②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역 분산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 **③ 지역의 전력수급 여건과 연계된 분산화 전략 마련**	2022-11-09

부처	내용	일시
환경부	• **수소경제위원회 개최, 수소산업 본격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정부는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새정부 출범 후 처음)하여 수소산업 본격 성장을 위한 새로운 수소경제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논의함 그간 수소 정책은 수소승용차, 발전용 연료전지 등 일부 활용 분야로 국한되어 생산, 저장, 운송 분야 등의 산업경쟁력이 선진국과 격차가 있었으며, 화석연료 기반의 그레이수소* 생태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었음 * ①LNG를 개질한 추출수소, ②석유화학·철강 공정에서 발생한 부생수소 이에 새정부는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및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이라는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소경제 정책방향을 금번 위원회에서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 (산업부)** – 대규모의 수소 수요 창출과, 그에 맞는 인프라·제도를 구축하여 수소 생태계 확장 ☞ '30년 수소상용차 3만대, 액화수소충전소 70개소, '36년 청정수소 발전 비중 7.1% 달성 **②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전략」 (산업부)** – 7大 전략분야 육성, 규제완화를 통해 핵심기술확보·수출산업화 추진 ☞ '30년 선진국 수준 기술 확보, 글로벌 1위 품목 10개, 수소전문기업 600개 육성 **③ 「수소기술 미래전략」 (과기정통부)** – 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산화 등 수소분야 초격차 기술 확보 추진 ☞ 수전해 기술 국산화율 100%, 액화·암모니아 기술 확보, 수소 모빌리티 시장 1위 달성 **< 3대 추진전략 및 9대 추진과제(안) >** 	2022-11-09

부처	내용	일시
국토 교통부	• **제7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23~'27) 공청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제7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성과 확산 및 관련 산업의 진흥 등을 위해 5년마다 건설기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임 이번 제7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작년 12월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수행 중으로, 5개 분야*별로 산·학·연 등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과 운영을 통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함 * 스마트건설 / 엔지니어링 / 안전·환경 / 인력 / R&D·데이터 등 기타 기본계획(안)은 건설산업이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첨단기술 적용을 선도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이라는 핵심 주제와 함께, 건설산업이 직면한 생산성/안전성 과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5대 추진전략 및 15개 중점과제를 제시할 계획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디지털 전환을 통한 스마트건설 실현** **②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 경쟁력 제고** **③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공사/시설물 안전 확보**	2022- 11-08

부처	내용	일시
	④ 청년 등 건설기술인 육성 **⑤ 핵심기술 개발, 데이터 개방 등 건설산업 고도화**	
금융 위원회	•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시장 점검회의 개최** **- 신용카드사 및 캐피탈사 자금조달 동향 점검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캐피탈사)와 함께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여전채, CP 등) 동향을 점검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의견을 청취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최근 채안펀드에서 일부 여전사의 채권을 매입(11.3일~)하는 등 여전채 관련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 진행** – 현재 시행중인 증권사 파생결합증권(ELS, DLS 등) 헤지자산 관련 여전채 편입한도 축소 계획도 유연하게 완화 적용 예정 – 증권사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관련 여전채 편입한도(2022년말까지 12%)가 2023년부터 8%로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3개월 유예하여 2023.3.31일까지는 종전의 12%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됨 **②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회사도 자체적인 유동성 및 자산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 – 금융당국과 금융업권이 수시로 소통하면서 시장안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	2022- 11-04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산업통상자원부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3.1.1. 시행 예정) **오존층에 유해한 특정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정물질의 파괴확인 등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종전에는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에 위탁하였으나, **앞으로는 한국석유화학협회에 위탁**하려는 것임 **(제19조)** * 특정물질: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른 오존층 파괴물질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2022-11-08
고용노동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2.12.11. 시행 예정)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설치해야 하는 노사협의회의 위원 중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대표성 및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927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 이에 따라, **법률로 상향된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선출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하던 것을 별도의 근로자 추천 없이도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3조)**	2022-11-08
국토교통부	•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12.8. 시행 예정. 다만, 제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국민의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초경량비행장장치사용사업의 등록 및 사업개선 명령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565호, 2021. 12. 7. 공포, 2022. 12. 8. 시행)됨 이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던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등록 및 사업개선 명령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한편, 관광분야와 관련된 항공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심의될 수 있도록 항공정책위원회 위원 중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을 제2차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제4조, 제33조제1항제28호, 제33조제3항·제4항, 제33조제5항 신설)**	2022-11-08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과학 기술정보 통신부	•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규제를 개선하여 전파를 이용하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이용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이동전화 등 휴대용 무선국에만 적용되던 무선국 허가의제를 확대하고, 위성방송국의 허가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며, 주파수 할당을 받아 개설하는 무선국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뿐만 아니라 변경검사 시에도 검사방식을 표본검사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기간을 2023년까지 연장하고, 전파사용료 연납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전자파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건물 내에 설치하는 전파응용설비에 대해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물 단위로 허가 주파수별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이음5G 단말기 신속 활용 (안 제21조제1호)** – 이음5G 현장에서 활용되는 로봇 등에 장착되는 단말기에 대해서도 무선국 허가의제 적용 **② 위성방송국 허가 유효기간 확대 (안 제36조제1항제2의2호)** – 위성방송국의 허가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 **③ 이동통신 무선국 검사 규제 완화 (안 제42조의2제2항)** – 주파수를 할당받아 개설하는 무선국에 대하여 준공검사 뿐만 아니라 변경검사 시에도 전수검사 대신 표본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④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 기간 연장 (안 제90조제1항)** –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면제를 2023년까지 1년 연장 **⑤ 전파사용료 부과·징수 제도 개선 (안 제91조제3항·제4항·제5항·제6항, 제123조의3제3의4호·제7호)** – 별도의 신청없이 전파사용료 연납이 즉시 가능하도록 연납제도를 개선하고, 전파사용료 고지방법 확대 등 부과·징수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명시 **⑥ 전파응용설비 검사제도 합리화 (안 제96조제2항·제3항·제4항, 제101조제2항·제4항)** – 전자파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건물 내 설치한 전파응용설비에 대해서는 건물 단위로 허가 주파수별 무선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2022- 11-10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 의견 제시기간 : 11/10(목)~12/8(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로 제출	
	•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 등 허가·검사 관련 서식에서 기재 항목을 간소화하고, 구비서류를 줄여 전파응용설비를 운용하는 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 간소화 (안 별지 제55호서식)** –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의 종단부진공관 관련 사항 등 기재사항을 간소화하고, 허가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중 송신장치(고주파 발생부) 계통도를 삭제 **② 전파응용설비 허가증 기재사항 간소화 (안 별지 제56호서식)** – 전파응용설비 허가증 기재사항 중 발진방식을 삭제 ※ 의견 제시기간 : 11/10(목)~12/20(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로 제출	2022-11-10
문화체육관광부	•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8860호, 2022. 5. 3. 일부개정, 2022. 11. 4. 시행)에 따른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대중형 골프장의 입장요금 책정의 기준, 지정 또는 재지정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대중형 골프장 입장요금 실태조사 실시와 그 결과의 공개 (안 제3조)** **②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요금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규정 (안 제5조)** –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요금을 수도권지역 회원제 골프장의 성수기(5월, 10월) 입장요금 평균(직전연도 12월 발표된 물가상승률 반영)으로 함 **③ 대중형 골프장의 입장요금 산정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금액의 규정 (안 제6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금액은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과세금액의 차이를 기준으로 34,000원을 규정	2022-11-09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③ 대중형 골프장의 입장요금 산정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금액의 규정 (안 제6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금액은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과세금액의 차이를 기준으로 34,000원을 규정 **④ 비회원제 골프장업 등록 시 대중형 골프장 지정 신청 등 (안 제7조)** – 비회원제 골프장 신규등록 시 대중형 골프장 지정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련 요건을 확인하여 지정여부를 30일 이내에 통보 ※ 의견 제시기간 : 11/9(수)~11/29(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산업과)로 제출	
	•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 관리 기준」** 골프장은 2021년 기준 4,759만 명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임에도 이용요금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골프장업의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을 제정하여 골프장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알권리 보장과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골프장업을 등록한 자가 표시해야 하는 이용요금을 규정 (안 제3조)** – 이용요금 표시는 골프장 입장요금, 카트 이용요금, 부대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대상으로 하며, 캐디 서비스 이용요금은 표시의무 대상에서 제외 **② 이용요금의 종류별로 표시방법을 규정 (안 제4조)** – 골프장 입장요금은 매월 시작일 00시에 맞춰 해당 월 입장요금을 홈페이지 상에 게재 – 카트 이용요금과 부대서비스 이용요금은 홈페이지 및 골프장 내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 **③ 골프장 이용요금에 대한 가격정보의 제공 주체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체육시설업협회를 명시 (안 제5조)**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표시의무자 이용요금 표시 이행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 (안 제6조)** **⑤ 고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에 대해 규정 (안 제8조)** ※ 의견 제시기간 : 11/9(수)~11/29(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산업과)로 제출	2022-11-09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 이용 편의를 위해 저작권 변경등록 등 신청 시 등록증 제출의무를 삭제하고자 함. 또한, 저작권 대량 등록에 따른 수수료 할인 제도가 2009년에 도입되었으나, 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인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등 할인기준이 엄격하여 수혜자를 확대하기 위해 등록 수수료 할인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이에 등록권리자만 동일해도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할인제도를 확대하여 등록 수수료 부담을 완화시키고 등록제도를 활성화하여 저작권 거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이와 더불어, 전자정부시대 온라인 등록 확대를 위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등록부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신청 시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함. 그리고, 법정허락 이용 승인신청 서식의 의무 기재항목을 최소화하고,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등록사항의 변경·경정·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 신청시 등록증 제출의무를 삭제함 (안 제9조제1항제1호, 별지 제33호)** **② 등록권리자가 10건을 초과하여 등록 신청을 한 경우 추가 건당 수수료를 할인해주록 함 (안 별표, 별지 제5호, 별지 제5호의2, 별지 제13호, 별지 제17호)** **③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등록부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신청시 수수료를 면제함 (안 별표 제7호, 별지 제24호의2)** **④ 법정허락 이용 승인신청 서식을 정비하고 작성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작성요령을 신설함 (안 별지 제2호)** ※ 의견 제시기간 : 11/10(목)~12/20(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과)로 제출	2022-11-10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식품 의약품 안전처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자가 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내의 2곳 이상의 장소에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할 때 어느 하나의 영업에 대해 영업소별로 매년 받아야 하는 안전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영업에 대해서도 해당 연도의 안전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안전위생교육의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등 민원을 신청할 때에는 수수료를 감면하여 전자민원을 활성화하며, 영업자의 상속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9천300원의 지위승계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자 안전위생교육 면제범위 확대 (안 제19조)**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자는 매년 영업소별로 안전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2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교육을 종업원에게 대신 받게 하거나 영업자가 같은 교육을 여러번 받아야 하는 불합리 발생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자가 같은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내의 2곳 이상의 장소에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할 때 어느 하나의 영업에 대해 안전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영업에 대해서도 해당 연도의 안전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 **②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등 전자민원 신청 시 수수료 감면 (안 별표 11, 별지 제1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12호, 제13호, 제15호, 제17호의2, 제18호 및 제28호 서식)** – 모든 민원을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함에도 영업허가 등 일부 민원에 대해서만 전자민원 신청 시 수수료를 감면하고 있어 전자민원 이용에 대한 유인이 낮은 실정 –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하면 수수료를 감면하여 전자민원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효율 제고 **③ 영업자의 상속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지위승계 수수료를 면제 (안 별표 11, 별지 제28호서식)** – 영업자 사망 시 상속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할 때 영업을 지속할 의사가 없어 폐업신고를 함께하는 경우에도 지위승계 신고 수수료를 납부해야하는 불합리 발생 – 영업자의 상속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9천300원의 지위승계 수수료 납부를 면제	2022- 11-09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 의견 제시기간 : 11/9(수)~12/20(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기능식품정책과)로 제출	
공정거래위원회	•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 강화를 위해 정액과징금의 부과기준금액을 기존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자진시정을 유도하여 수급사업자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 감경비율을 상향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정액과징금 부과기준금액 상향 (안 IV.1.다.)** – 정액과징금 기본산정기준의 최고 금액을 기존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하면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금액은 9억원 이상 20억원 이하로,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금액은 2억 원 이상에서 9억 원 미만으로 함 **② 자진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 상향 (안 IV.3.다.(1))** –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의 과징금 감경 비율 상한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하고, 수급사업자 피해를 모두 구제하였거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모두 제거한 경우 100분의 50 이내에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모두 구제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액의 50% 이상을 구제하였거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경하도록 함 ※ 의견 제시기간 : 11/8(화)~11/28(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로 제출	2022-11-08
	•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 대규모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 자진 시정을 유도함으로써 납품업자등의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법 위반행위의 자진 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률을 최대 50%까지 차등하여 상향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위반행위로 인한 관련 납품업자 등의 피해의 원상회복 등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한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함**	2022-11-08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② 위반행위로 인한 관련 납품업자등의 피해의 50% 이상 회복 등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3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함 **③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위반행위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위반행위 효과가 제거되지 않은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함** **④ ① 내지 ③의 자진 시정이 조사가 개시된 이후 또는 심사보고서의 송부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각 감경률을 축소할 수 있음** ※ 의견 제시기간 : 11/8(화)~11/28(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유통거래과)로 제출	
	•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법위반 사업자의 자진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을 상향하여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타 법률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용어,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자진시정에 대한 감경 비율 상향 (안 IV. 3. 다.)** – 법위반 사업자가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대리점주의 피해를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구제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법위반 사업자의 자진 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을 상향 (최대 20%→최대 50%) **② 공정거래법 등 타 분야와의 정합성 제고 (안 II. 10., 안 II. 8. 다., 안 IV. 3. 다. 등)** –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 타 분야에서는 해당 법률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도입된 바 있으나 아직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에는 미도입되어 법령간 정합성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음 – 이에 ▲부당이득의 정의 신설, ▲위반횟수 및 가중치 관련 기준 명확화, ▲조사·심의 협력 관련 기준 명확화 등의 내용을 도입함 **③ 조문 정비 (안 I., 안 II. 2., 안 II. 4. 등)** – 동 고시의 조문에 ▲일상에서 쓰이지 않는 표현 사용, ▲용어 불일치, ▲규정간 내용 불일치, ▲인용조문 번호 오기 등이 존재하여 정비가 필요함 – 이에 ▲일상에서 쓰이는 용어로 표현을 순화하고, ▲띄어쓰기 및 용어를 통일하고, ▲상충되는 규정 정비, ▲인용조문 번호 오기 정정 등을 통해 조문을 정비함	2022-11-08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 의견 제시기간 : 11/8(화)~11/28(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대리점거래과)로 제출	
	•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가맹본부의 법 위반행위 자진 시정을 유도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의 과징금 감경률을 최대 50%까지 차등하여 상향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피해의 원상회복 등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한 경우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함** **② 위반행위의 효과를 상당 부분 제거한 경우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3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함** **③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위반행위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위반행위 효과가 제거되지 않은 경우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함** ※ 의견 제시기간 : 11/9(수)~11/29(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가맹거래과)로 제출	2022-11-09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정무 위원회	•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안(배진교의원 등 12인)」** 온라인 중개서비스를 영위하는 플랫폼시장은 네트워크 효과, 전환비용, 규모의 확대 등에 따라 일부 플랫폼에 의한 승자독식의 독과점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장지배적 플랫폼은 자신의 지배력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자사 상품 또는 서비스를 차별 취급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행위가 만연하고 있음. 또한 유럽연합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규칙(Regulation on Promotion Fairness and Transparency for Business Users of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 세계적으로도 플랫폼 독과점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행위로 인하여 혁신이 저해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되며 나아가 언론 기능의 훼손 및 개인정보 침해 등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온라인 플랫폼시장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온라인 플랫폼시장을 정의하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여, 온라인 플랫폼시장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이 국내 기준 월간 실제 이용자수가 1천만명 이상이거나, 이용사업자가 2만명 이상인 경우 등에 해당되면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더 이상 시장지배적 플랫폼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4조제1항 및 제3항)** **② 시장지배적 플랫폼은 상거래 또는 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자의 주식, 자본 또는 자산의 전부나 일부를 직·간접적으로 인수하는 행위 등을 부당한 기업인수합병으로 규정하여 금지함 (안 제7조제1항)** **③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플랫폼 운영과 함께 해당 플랫폼에서 자신의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 또는 공급하는 이해충돌행위를 금지함 (안 제8조)** **④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임직원인 사람이나 지배권을 가진 자는 분리된 계열회사의 직무를 겸하지 못하고, 분리된 계열회사와 거래행위를 할 수 없음을 규정함 (안 제9조)**	2022-11-08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⑤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시장지배적 플랫폼을 이용하여 자사 제품에 특혜를 제공하거나 이용사업자들을 불리하게 다루는 경우 또는 이용사업자들 사이에 차별하는 차별적 취급행위를 금지함 (안 제10조) **⑥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이용사업자가 데이터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UI)를 유지하여야 함 (안 제12조)** **⑦ 공정거래위원회 내에 온라인 플랫폼 감시를 전문으로 하는 플랫폼시장감독국을 두어 온라인 플랫폼을 감시하도록 규정함 (안 제13조)** **⑧ 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손해를 받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함 (안 제14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외 168인)」** 최근 원유, 철광석, 펄프 등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1년의 원재료 가격은 평균 47.6%가 상승한 반면 납품단가 상승률은 10.2%에 그쳤으며, 영업이익률은 7.0%에서 4.7%로 감소했음 현행법은 공급원가 변동 등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를 두고 있으나,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거래단절을 우려한 중소기업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로 인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로 분담해야 하지만, 우리나라 산업구조상 약자인 중소기업이 사실상 대부분의 부담을 지고 있음 이에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의 내용을 서면에 기재하고 연동대상, 원재료, 요건, 반영시점, 연동산식 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거래 당사자간 자율협의로 연동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등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납품단가 또는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지급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상생발전과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하여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작성하고, 연동계약서에 기재된 원재료의 가격 변동이 연동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산식 등에 따라 목적물등의 납품단가 또는 하도급대금을 조정·지급하도록 함 (안 제3조의6제1항 및 제13조제9항 신설)**	2022-11-08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② **공정거래위원장은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안 제3조의6제2항)** ③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하도급대금을 조정·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조치 및 벌칙을 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5조 및 제30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코로나 금융지원 종료와 금리 상승으로 개인 대출의 연체 위험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빚 갚기가 힘들어 연체에 이르렀는데 일부만 연체하더라도 원금 전체에 대한 연체가산이자를 물어야 해서 채무자의 추심고통만 키우고 상환 의지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원금 전체에 연체이자를 부과하면서 연체부담이 끝없이 증가하도록 하는 현행 이자부과방식은 추심강도와 상환 부담을 오히려 증가시켜 장기연체자를 양산하는 상황임 이에 **대출금 일부를 연체하면 연체한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물리도록 하여 부당한 연체부담 증대를 최소화하고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대리·중개할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였을 때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함 (안 제19조제1항제1호라목 및 제26조제1항제4호의2)** ② **대출성 상품에 관해 일부 상환을 지체한 경우 지체된 부분에 한해서만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계약 조항은 무효로 함 (안 제45조의2제1항 및 제3항)**	2022-11-09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기획재정 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을 독려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두고 있는데,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및 도서 · 신문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 사용분과 같은 특정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최소 공제율인 15%보다 높은 30% 또는 4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약 600만 가구에 달하고, 전체 가구의 3분의 1 이상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가구가 많고, 이에 따른 반려동물 유기 및 방치 문제도 대두되고 있음 이에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지출한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하여 35%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안 제126조의2제2항제2호의2 신설 등)**	2022-11-0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영상 제작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3,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글로벌 콘텐츠 기업인 넷플릭스, 애플TV, 디즈니플러스 등이 투자를 확대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시장으로 진출을 강화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세제지원을 유지·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과학·기술개발과 관련된 산업의 경우 여러 조세감면 특례를 두고 있으나 영상콘텐츠 개발과 관련된 산업의 경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유일하며, 특히 영상콘텐츠 제작 연구개발비에 대한 조세 지원을 받고자 하여도 현행법상의 연구개발에 대한 정의가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서비스·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의 연장, 세액공제율의 상향, 특례적용 대상의 추가 및 연구개발의 정의에 문화적 진전과 영상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2022-11-08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주요 내용으로는 ① **연구개발 정의의 범위에 "문화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영상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추가함으로써 영상콘텐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의 근거를 마련함 (안 제2조제1항제11호)** ②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을 추가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며, 제작비용에 대한 공제율을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7,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0으로 각각 상향 조정함 (안 제25조의6제1항)**	
과학 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1인)」** 최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부가통신서비스 제공이 상당 기간 중단되어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전기통신설비의 안정성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전기통신설비의 보호 및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등을 두고 있으나 전기통신설비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데, 화재 등의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그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설비의 이중화 등을 통하여 전기통신설비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데이터센터 등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의 주요 전기통신설비를 다중화하도록 하여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22조의7)**	2022-11-04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0인)」** 국제사회가 기후위기 대응 등을 위한 탈탄소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민간에서도 기후변화 억제를 위해 기업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글로벌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18년 대비 35%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로 발전된 전력을 30.2%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인 NDC를 유엔기후변화협약과 사무국에 제출함	2022-11-07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하지만 이처럼 재생에너지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에너지 흐름 속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상향이 필요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의 관리없이 방치되어 온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로 인해 재생에너지 설비가 들어설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특히 이격거리 규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명확한 기준없이 각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규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최소 100미터부터 최대 1000미터까지 천차만별이며, 지리가 상대적으로 협소한 일부 지역의 경우 이격거리 규제 대상 지역을 제외하면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공간이 매우 협소해지는 등 과도한 입지규제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고 있음 이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이격거리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입지에 관해 특정 시설로부터 이격거리를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되,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태양광 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 풍력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500m의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설비 입지 규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하여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안 제27조의3 신설)**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0인)」** 비상장 벤처 · 스타트업은 재무적 여건에 기반한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워, 장기 모험자본인 벤처투자가 기업 성장의 중요한 수단임. 기업가치평가와 융자가 곤란한 비상장 벤처 · 스타트업의 경우 해외의 선진벤처금융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벤처투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투자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음 현행 법률은 벤처투자조합이 차입을 통해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벤처기업의 성장 촉진과 인수 · 합병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벤처투자조합이 필요한 경우 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아울러, **인수·합병 목적으로 결성된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인수·합병 당사자가 출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인수·합병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설립 및 운영 (안 제51조의2 신설)**	2022-11-09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를 완전자회사로 설립하여 자금차입이 가능하도록 하되,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 · 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벤처투자조합이 설립한 투자목적회사는 인수 · 합병 당사자가 출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인수 · 합병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② 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안 제62조)** – 벤처투자조합이 설립한 투자목적회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설립 · 운영되는 경우 이를 설립한 벤처투자조합에 대해 등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	
환경노동위원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양비와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휴업보상 및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업무 외의 이유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의 휴업에 대한 근거 규정은 여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부상이나 질병에도 불구하고 요양비나 생계비의 부담으로 휴업할 수 없어 계속하여 근무하거나, 이로 인해 부상·질병이 악화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런데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이 유급 질병휴가를 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는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통해 각국에 질병휴가와 질병휴가급여를 법률로 보장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한 부상·질병의 경우에도 30일의 범위에서 휴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 경우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기간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질병휴가급여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부상·질병 중 휴업을 보장하고자 함 (안 제62조의2 신설 등)**	2022-11-04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30인)」** 현행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노동쟁의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소송 등을 통해 근로자로 인정받기 전까지 헌법상 노동3권을 전혀 향유하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또한 하청근로자 등의 노동조건 등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법원 판례 등에 따르더라도 사용자의 지위가 인정되고 실제로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면서도 정작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다하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노사분쟁은 물론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2022-11-04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나아가 헌법과 현행법은 노동조건의 유지 ·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 향상을 노동3권 행사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하여 결과적으로 노사간의 대화와 교섭을 통한 문제해결을 막고 헌법상 노동3권의 온전한 보장을 저해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일정한 범위에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헌법상 자유권인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고 침해하는 방향으로 민사면책 대상을 설정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에 따른 집단적 행위인 쟁의행위 등에 대하여 근로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고,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단순 근로제공 거부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며, 일부 행위에만 참여한 조합원의 경우에도 전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등 그 면책 대상과 범위가 매우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결국 이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나 가압류 신청이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괴롭히거나 탄압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는 결과가 야기되고, 이와 같은 상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임 이에 **근로자와 사용자 정의를 개정하여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에 따라 양산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헌법상 노동3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부당한 현실을 개선하고, 노동쟁의 정의를 헌법과 현행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노사간의 대화와 교섭의 장을 폭넓게 보장하고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또한 **헌법을 기준으로 쟁의행위 등에 따른 면책 대상과 범위를 설정하여 손해배상청구 제한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석되고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아가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노사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꾀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하여 실제 근로자임에도 장기간 노동3권을 향유하지 못하는 현실의 불합리를 시정하고자 함 (안 제2조제1호)** **② 근로자의 노동조건 등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 등을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정의를 실질화하고자 함 (안 제2조제2호)**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③ 노동쟁의를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경영상 해고 포함) 기타 대우 등 노동조건과 근로자의 지위(사업재편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 노동조건과 근로자의 지위 포함),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로 규정하여 노동쟁의의 대상을 헌법상 노동3권 규정에 부합하도록 실질화하고자 함 (안 제2조제5호) ④ 사용자는 헌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안 제3조제1항 신설) ⑤ 사용자는 쟁의행위 등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안 제3조제2항 신설) ⑥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노동조합 이외에 근로자 개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안 제3조제3항 신설) ⑦ 사용자는 노무제공 거부로 인한 손해와 정당한 쟁의행위 등이었더라도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을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안 제3조제4항 신설) ⑧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지 않도록 함 (안 제3조제5항 신설) ⑨ 「신원보증법」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함 (안 제3조제6항 신설) ⑩ 사용자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근로자를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소를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으로 소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 (안 제3조제7항 신설) ⑪ 법원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비율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함 (안 제3조의2제1항 신설) ⑫ 손해배상의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쟁의행위의 원인과 경과, 배상의무자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면제, 감경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도록 함 (안 제3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⑬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를 행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의2 신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 · 변경할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특히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취업규칙의 작성 · 변경 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의견 제출 과정에 근로자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자유로운 의견표출이 제한되고, 이에 따라 일부 사업장에서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이 강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을 개정하여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의견 청취 및 동의 여부 확인 과정에 근로자의 신상정보를 익명 처리를 통해 비밀로서 보호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지원하는 취업규칙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용하도록 하여 취업규칙에 대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견표출을 보장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안 제93조, 제93조의2, 제94조제2항 및 제3항)**	2022-11-04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2인)」**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건설업의 경우에는 근로자 채용이 빈번하고 같은 내용의 업무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많아 채용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제거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교육을 기초안전보건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코로나19 확산기 이후 디지털 · 자동화 · 비대면화가 산업 전반으로 가속화되며 최근 2년간 전체 일용직 근로자가 22만명 감소(-15%)하는 동안 택배와 배달 등의 운수창고업의 일용직은 1만7천명 증가(43%)증가하는 등 생활물류 기반의 물류업 일용직 일자리는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물류업의 경우에도 동종업계를 이동하며 같은 내용의 작업을 위하여 수시 채용되는 일용직 근로자가 많음에도 건설업의 경우처럼 별도의 교육인 기초안전보건교육으로 대체할 수 없어 근로자를 채용할 때마다 같은 내용의 안전보건교육이 반복되어 교육의 효과와 근로자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음 따라서 **물류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도 안전보건교육을 기초안전보건교육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29조 및 제31조 등)**	2022-11-04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상임위	아래 【별첨1】 참조		
국회도서관	11/18(금)	「국회도서관 웹진」 제55호 발간 - '한발 앞서 국가의 미래를 보다'…국가전략 전문가 간담회	
예산정책처	11/18(금)	2022년 「예산춘추」 네 번째(Vol.68) 발간	
입법조사처	11/14(월)	「NARS 입법·정책」 발간 -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별첨1] 제400회 국회(정기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운영위	11/16(수) 10:00	전체회의	- 예산안 심사
법사위	11/14(월) 10:00	전체회의	- 예산안 등 의결, 고유법 상정
정무위	11/15(화) 10:00	법안심사1소위	- 법안 심사
	11/17(목) 10:00	법안심사2소위	- 법안 심사
기재위	11/17(목) 14:00	전체회의	- 법안 상정
교육위	11/18(금) 10:00	전체회의	- 법안 상정
국방위	11/15(화) 14:00	법안심사소위	- 법안 심사
	11/17(목) 14:00	법안심사소위	- 법안 심사
	11/18(금) 10:00	전체회의	- 법안 등, 법안공청회(함정의 운항안정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미정))
행안위	11/16(수) 10:00	전체회의	- 예산안 의결 및 법안 상정
농해수위	11/15(화) 10:00	해양법안소위	- 법안 심사
산자위	11/14(월) 10:30	예결소위	- 예산안 심의
	11/15(화) 10:00	예결소위	- 예산안 의결
	11/16(수) 10:00	전체회의	- 예산안 의결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복지위	11/15(화) 10:00	제2법안소위	- 법안 심사
	11/16(수) 10:00	제1법안소위	- 법안 심사
환노위	11/15(화) 10:00	예결소위	- 예산안 심사
	11/16(수) 10:00	예결소위	- 예산안 심사
	11/17(목) 10:00	전체회의	- 예산안 의결, 법안 상정
	11/17(목) 14:00	전체회의	- 법안공청회 (손해배상책임 면책 관련)
국토위	11/14(월) 10:00	예결소위	- 예산안 등 심사(국토)
	11/15(화) 10:00	예결소위	- 예산안 등 심사(교통)
	11/16(수) 14:00	전체회의	- 예산안 등 의결, 법안 상정
	11/17(목) 10:00	국토법안심사소위	- 법안 심사
여가위	11/15(화) 09:30	전체회의	- 예산안 등 상정
	11/16(수) 09:30	예결소위	- 예산안 등 심사
	11/17(목) 09:30	전체회의	- 예산안 등 의결
	11/17(목) 14:30	전체회의	- 법안공청회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
예결위	11/14(월) 10:00	전체회의	- 부별 심사(비경제부처)
	11/15(화) 10:00	전체회의	- 부별 심사(비경제부처)
	11/17(목) 10:00	예결소위	- 예산안 등 심사
연금특위	11/16(수) 13:30	전체회의	-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의 건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11/14(월) 10:00	국민의힘 메타버스 콘텐츠 산업 정책 육성 세미나 - 가만있을 수 없다. 메타버스 생태계, 콘텐츠의 위기와 미래	황보승희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11/14(월) 10:00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	허영 의원실, 국회환경포럼	의원회관 2세미나실
11/14(월) 10:00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실손비서」 도입 토론회	윤창현 의원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원회관 7간담회실
11/14(월) 13:30	자율주행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간담회	양금희 의원실	의원회관 8간담회실
11/14(월) 14:00	새로운 시민사회경제정책포럼 - 윤석열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전환과 전략	윤주경·성일종· 윤창현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11/15(화) 10:00	과학기술계 출연(연) 발전방향 토론회 - 국가연구계발시스템 대전환을 위하여	조승래·윤영찬· 조정훈 의원실	의원회관 8간담회실
11/15(화) 13:30	청정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인증제도 도입방안	노용호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11/15(화) 14:00	공익신탁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박주민·전주혜· 조정훈 의원실	의원회관 7간담회실
11/16(수) 09:30	디지털 혁신인재 양성 어떻게 할 것인가? - 스타트업 인재 발굴과 양성을 중심으로	서병수 의원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원회관 1소회의실
11/16(수) 14:00	새미래포럼 창립기념 특별토론회 - 방송산업 구조개편을 위한 정책과제를 말하다!	김기현 의원실, 새미래포럼 등	의원회관 3간담회실
11/16(수) 14:00	안정적인 수출입 해상 물류를 위한 선·화주 상어 국회 정책세미나	어기구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11/18(금) 10:00	고령자·장애인 등을 위한 의사결정지원법안 토론회	이종성·전주혜 의원실	의원회관 9간담회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2] 지난 주 뉴스레터(제160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소속기관>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도서관	11/8(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8호 발간 – 프랑스의 우주폐기물 감축 입법례	
	11/10(목)	「현안, 외국에선?」 제47호 발간 – 일본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저감 대책	

<국회의원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11/7(월) 10:00	제6회 재외동포정책포럼 - 한인네트워크와 공공외교	태영호 의원실, 세계한인네트워크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11/8(화) 10:00	디지털 유산 승계 제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허은아 의원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
11/8(화) 10:00	법정의료인력기준 개선과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국회토론회	서영석·최연숙· 강은미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11/9(수) 10:00	분산형 전원으로서 집단에너지의 역할과 확대를 위한 제언 에너지 정책토론회	박수영·홍정민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11/10(목) 10:00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포럼 -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개선 방안	변재일·김영식 의원실, 미디어미래연구소	의원회관 2세미나실
11/11(금) 14:00	대마산업활성화 및 관련법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	우원식·김형동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백대용** | 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박현주** (Hyunju Helen Pak) | 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 **김성범** | 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 **홍정아** (Claudia Hong) | 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 **방세희** | 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 **노지은** | 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 **성재열** | 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 **조성환** | 변호사 T. 02-316-2596 E. suhcho@shinkim.com
- **박건백** | 변호사 T. 02-316-4670 E. gbapark@shinkim.com
- **나인선** | 변호사 T. 02-316-1795 E. isna@shinkim.com
- **나인경** | 변호사 T. 02-316-7251 E. ikra@shinkim.com
- **김은혜** | 변호사 T. 02-316-1736 E. ehkim@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